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60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정희정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2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22421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중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2. 28. 체결한 각 14,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의 증여 내지 무상 사용제공계약 1) 을 취소한다(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54,866,49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46,548,4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N, O”를 “N, O호”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월 차임 합계는 13,174,700이다”를 “월 차임 합계는 14,492,17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차임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2. 23. B가 원고에 대하여 F의 채무(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E의 채무(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F이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 중 9,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F이 2015. 7. 31.까지 변제한 돈을 위 채무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은 원금 124,099,299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15. 12. 28. B에 대하여 204,299,241원[= F에 대한 원금 채권 124,099,299원 + F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10,199,942원(= 124,099,299원 $\times$ 0.2 $\times$ 150 $\div$ 365, 원 미만 버림) + E에 대한 원금 채권 70,000,000원]의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2015. 12. 28. 당시 예금채권 합계액이 22,595,622원인 사실, B의 재무상태표상 2015. 12. 31. 기준 B의 유동자산은 371,253,767원(= 보통예금 22,212,170원 + 외상매출금 69,120,000원 + 단기대여금 75,193,837원 + 선급금 204,727,760원), 비유동자산은 766,482,993원[= 유형자산 24,402,659원(= 비품 14,542,619원 + 시설장치 9,860,400원) + 무형자산(저작권)

591,333,334원 + 기타 비유동자산 150,747,000원(= 임대보증금 131,747,000원 + 기타 보증금 19,000,000원)]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은 1,137,736,7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단기대여금, 선급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채권, 선급금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 위 채권 등이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단기대여금, 선급금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무형자산인 저작권의 경우 B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아도 저작권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저작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비유동자산 중 기타 보증금의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의 기재만으로는 그 내역이나 회수가능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단기대여금, 선급금, 저작권, 기타 보증금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의 재무상태표상 임대차보증금 131,747,000원은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일치하는데, B가 2015. 4.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31,747,000원에서 2015. 12. 28.까지의 8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합계 115,937,360원(= 월 차임 14,492,170원 × 8월)을 공제하면 잔액은 15,809,64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B가 2015. 12. 28.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131,927,921원(= 보통예금 채권 22,595,622원 + 외상매출금 69,120,000원 + 유형자산 24,402,659원 + 임대차보증금 15,809,640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2015. 12. 28.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204,299,24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여,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1,400만 원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B로부터 각 1,400만 원씩을 지급받은 후 이를 초과하는 돈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나 피고들 모두 법인이므로 B가 위 돈을 대여하였다면 위 당사자들 사이에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과 같은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B나 피고들이 위 대여금 내지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위 1,4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의 내용(계약 시기, 이자 및 변제기 약정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 C의 경우 B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B에게 2016. 1. 31. 6,000,000원, 2016. 2. 15. 5,738,400원을 각 송금하고 2016. 2. 1. P에게 B의 명의로 6,866,980원을 송금했는데,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14,000,000원을 초과하는 18,605,380원으로 위 피고가 2016. 2. 15.까지 1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하고, 2016. 2. 15. 나머지 4,605,380원을 B에게 대여하였는 것은 금원의 단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 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⑤ 앞서 보았던 B와 피고들의 대표자, 감사 등이 서로 부부관계 등에 있고, B와 피고들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 및 자금 혼용의 사실이 있는 점, ⑥ B가 자신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각 1,400만 원의 수령 이후 B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B가 피고들에게 위 각 1,4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 “C, D은”을 “피고들은”으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한바,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지 않았는바, 이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정하경, 판사 박선민

1) 원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채권에는 피고들에 대한 각 사무실 무상 제공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중 취소를 구하는 위 증여계약을 위와 같이 선행한다.